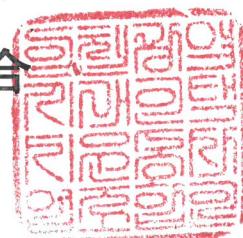


西紀 2025年 1月 24日 制定施行

플랫폼 택시 가맹협의회 운영 규정



仁川廣域市個人택시운송事業組合



플랫폼 택시 가맹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 정관 제5조1항 및 8항에 의거,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플랫폼 택시 가맹본부 사업자(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와의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여 개인택시 사업자가 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자라 한다)을 함께 있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자들의 권익을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구 구성)

조합은 가맹본부와 계약이나 협약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할 경우 가맹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 가맹사업자들을 대표하는 가맹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가맹협의회

제3조 (업무)

- ①가맹사업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해결 방안 모색
- ②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와 공공의 이익도모
- ③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유지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및 지도
- ④가맹사업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조합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계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진행되는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가맹사업자)으로 가맹협의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

본 규정 제4조에 의한 회원 중 본 조합의 이사, 대의원,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위촉된 자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종류)

회장 1명

운영회원 5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제7조(임원의 선임)

각 가맹협의회 회장은 조합 이사장이 선임하여 본 조합 대의원회에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모든 임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조합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가맹협의회를 대표하며 가맹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에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운영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수)

①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대의원회 승인으로 가맹사업자 협의회 임원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회의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 협조)

가맹사업자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 결과에 대하여, 조합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결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에는 조합 이사장은 즉시 해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임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즉시 해임조치 한다.

제13조 (회의 소집)

가맹협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제14조 (총회의 위임)

가맹협의회는 총회에 갈음하여 임원 회의를 둔다.

제15조 (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회장은 표결권을 갖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 ①조합에서 부의한 안건
- ②임원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의 안건
- ③가맹협의회 사업계획
- ④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일체
- ⑤본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7조 (통상관계)

본 규정 이외에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조합 정관과 제규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18조

본 규정은 대의원회의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